성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제정하는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제정되는 「성주군 군세 징수 조례」로 조문 이관

-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종전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2653('17.3.20)〕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17621('17.3.21)〕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17.3.23~ '17.4.12〕

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 지방세정책과-111(2017. 3. 8)호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 이륜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성주군 금고 예탁을 의무화하였으며
-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유예대상 중 성실납세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성주군 군세 징수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등 상위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